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3년 6월 2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7.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일괄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법률 용어 순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별 개요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일반회계 출연금과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20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운전·시설·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2005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청사건립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을 적립중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청사건립기금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192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구 청사 건립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임.
 - 체육진흥기금은 구민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 사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음. 경륜지원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53억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요트부 운영지원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을 시달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의 ‘일몰제도’ 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근거조문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8 호
----------	---------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일괄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5.30~ 6.19, 20일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미반영)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의 2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전단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8인”을 “8명”으로 한다.

제6조 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6조 3을 “제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2 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로 하고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1인을”를 “1명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3조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자로”을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해촉된”을 “위촉 해제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촉할”을 “위촉 해제할”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 중 “제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제43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 ----- -----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p>
<p>제2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생 략)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생 략)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 	<p>제2조의2(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 ----- 2. (현행과 같음) 3. ----- ----- ----- ----- ----- 필요한 ----- 4. (현행과 같음) 5. -----

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7.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9.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생략)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출연금

2. ~ 3. (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

6. -----
-----.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른 -----

7. ----- 새로 -----
-----.

8. 9.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생략)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7.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과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의 2(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6조의 3(회의 및 수당 등) ① ~ 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② ----- 1명 ----- 8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 2(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 3(회의 및 수당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에서 -----.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의 2(용자계획수립 및 추가용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
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
의하여 추가용자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
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
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
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용자계획수립 및 추가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 제5조제4항에 따라 -----

-----.

제9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

----- 제4조에 따라 -

-----.

②-----

-----.

1.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2. 3. (생략)

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 제4조에 따른 -----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 회계연도 -----

-----.

② ----- 회계연도마다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이하 ----- -----.</p> <p>②----- 따라 -----.</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3조(기금의 조성) ----- ----- 각 호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 건립을</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 -----</p>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 1. ~ 2. (생략)
 - 3.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㉑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 2. (생략)
- 3.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위촉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

----- 각 호에 ----- 한정하여 -----.

- 1. ~ 2. (생략)
 -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 ② (현행과 같음)
- ③-----
-----각 호의 사람으로 -----.

- 1. 구의회에서 -----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 사람

④ -----
----- 1명을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남은 기간-----.

③ ----- 구의회에서 ---

한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의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회계연도 -----

-----.

② ----- 회계연도마다 -----

-----.

제13조(의견청취 등) ----- 인정할 -----

-----.

제14조(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제3조(기금의 재원) ----- 각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4.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 각호의 -----.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 (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 각호의 -----. 1. (현행과 같음) 2. <u>해당연도</u> ----- ----- 3. (현행과 같음) ②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생략)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제10조(회의) ① ~ ④ (생략)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으로 -----

1. 구의회에서 -----
2. -----

----- 사람

3. (현행과 같음)

④ -----

----- 위촉 해
제된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위촉 해제
할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대해서 -----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중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

----- 규정-----.